

# 작은화를 면하려다 오히려 큰화를 초래

본 내용은 Akin Gump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Alex Chartove 특허변호사의 글을 번역한 것임.

● 저자: Alex Chartove

- 1976년 Brandeis대학에서 물리학
- 1980년 Duke대 법대 JD취득
- 현재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D.C.의 변호사  
MIT 박사과정 수학중  
Akin, Gump, Strauss, Hauer&Feld법률사무  
소 근무  
연방항고재판소 연보(Federal Circuit  
Yearbook) 편집인

● 번역: 양윤영

- 1986년 삼성전자 입사
- 1991년 방송대 영문학
- 1997년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순차통역  
과정(1년) 수료
- 현재 삼성전자 법무팀 상표담당

## 목 차

- I. 개요
- II. 배경
- III. 항소
- IV. 결론

〈이번호에 전재〉

## I. 개요(Introduction)

특허침해 대용시, 두 가지 방어수단이 있다. 해당 특허의 무효성을 주장하거나, 해당 특허가 실시 불가능함(unenforceability)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비록 자사의 제품이나 제조방법이 해당 특허 클레임<sup>1)</sup> 범위이내라 할지라도 특허권자가 침해주장을 할 수 없도록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은 특허출원과정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사실들에 근거하여 주장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허출원시 특허권자가 발명을 부적절하게 기술하였을 때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고, 또한 출원과정에서 특허출원자의 부당행위(an act of inequitable conduct), 즉 해당 특허와 관련 있는 선행기술을 게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특허는 실시성을 끓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특허 유효성을 유지하고 또한 타인의 특허가 실시가능성이 상실될 수 있는 여러 행위를 인식하고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 1) 특허클레임은 특허의 끝부분에 위치하며, 절마다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특허가 허여되어 있는 발명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 2) 연방항고재판소의 재판결과는 미국내 모든 특허분쟁에 효력을 미친다고 법으로 규정 되어 있음. 28U.S.C. §1295(a). 따라서 연방항고재판소(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Federal Circuit, Fed. Cir. 또는 CAFC라고도 함)는 일반적으로 특허 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 여겨지고 있음.

이다. 어떤 상황에서 특허가 무효화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실시성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출원자가 특허 출원과정에서 부당행위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당 특허출원에 포함된 모든 특허 클레임은 실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인가? 출원자가 일부 클레임 만이라도 실시가능하도록 방어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러한 몇가지 의문점들이 최근 CAFC<sup>2)</sup>의 Baxter International, Inc. v. McGaw, Inc.<sup>3)</sup> 판결에서 다루어졌다. 이하에 본 Baxter 재판에서 다루어졌던 세부사항 및 한국기업이 미국특허의 유효성 및 실시성 평가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지침을 이야기 해 보겠다.

## II. 배경(the Facts)

### 1. 발명(the Invention)

본 Baxter International건은 인체의 정맥을 통하여 액체를 투입하는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 3건<sup>4)</sup>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는 환자의 정맥에 삽입된 도뇨관을 통해서 정맥으로 액체 투입이 이루어졌다. 이때 조절기(administration set)는 액체원(fluids sources)과 도뇨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 조절기에는 투입구 부분(injection site)이 있어서, 이 곳을 통하여 약물등의 액체가 도뇨관을 통해서 유입되었다.

종래에는 투입구에 단단한 고무 격막(solid

rubber septum)이 있어서 이 부분에 날카로운 주사를 이용하여 약물이나 다른 액체를 흘려보냈다. 그러나 고무격막을 뚫을때 이처럼 날카로운 주사를 이용하면 오염된 주사바늘로 인해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또한 끝이 무딘 주사를 사용하여 약물을 주입하면 약물이 누출되는 문제점이 있다.

1986년 특허권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의 날카로운 바늘을 사용하는 단단한 격막으로 된 투입구를 이용하여 실험했다. 특허권자는 날카로운 주사바늘 대신 뭉툭한 캐뉼러(cannula:환부에 꽂아 넣어 액을 빼내거나 약을 넣을 때 사용하는 의료기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얇은 구멍이 있는 격막(pre-slit septum)으로 된 새로운 투입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종래기술 격막을 이용했던 것이다. 특허권자가 개발한 새로운 시스템은 약물이 누출되지 않고, 또한 반드시 날카로운 바늘을 사용할 필요도 없어졌다.

### 2. 심사(the Prosecution)

1988년 1월 특허권자는 1~59번 클레임이 있는 “모출원”을 하였다. 1988년 7월 특허권자는 이전에 출원했던 1~59번의 모두 클레임을 취소하고, 60~120번 클레임을 추가하는 예비보정(preliminary amendment)을 하였다. 특허청은 이러한 보정을 인정하였다.

1989년 1월 미국 특허청은 모출원서에 4건의 별개 발명이 정의되어 있으므로 특허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거절 의견서(a restriction

3) USPQ2d(Fed. Cir. 1998).

4) 5,171,234; 5,167,648; 5,157,554.

requirement)를 통지하였다. 1989년 4월 출원자는 95번과 96번 클레임을 보정하고, 118~120번 클레임을 취소하고, 121~124번 클레임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1989년 12월 14일 특허청은 최종 거절 통지서를 발부하였다.

1990년 6월 11일, 특허권자는 앞서의 특허를 분할하여 그 중 하나를 우편으로 출원하였다. 출원하면서, 특허권자는 1~59번 클레임, 95~100번 클레임 및 109~124번 클레임은 본 분할출원서에서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특허청에 제출한 서류는 1~59번 클레임만을 포함하는 모출원서사본 1부 뿐이었다.

1990년 6월 14일 모출원은 포기되었다.

1990년 6월 26일 특허청은 첫번째 분할출원한 건에 60~124번째 클레임이 누락되었으므로 출원 일을 할당할 수 없다는 불완전출원통지서(Notice of Incomplete Application)를 발부하였다. 통지서에 의하면 첫번째 분할 출원건은 60~124번째 클레임이 제출된 날이 출원일이 된다고 되어 있었다.

1990년 7월 16일, 특허권자는 60~124번째 클레임을 제출하여서, 1990년 7월 16일이 특허 출원일이 되었으나, 특허권자가 출원일 변경 청원을 하여, 특허청은 첫번째 분할출원의 출원일을 최초 출원일인 1990년 6월 11일로 변경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첫번째 분할출원건은 “A” 특허로 등록되었다.

한편, 1990년 6월 12일, 특허권자는 두번째 분할출원서 및 세번째 분할출원서를 출원하였다. 첫

번째 분할출원서에서와 마찬가지로 두번째, 세번째 분할출원서에도 60~124번 클레임은 누락된 채, 1~59번 클레임을 취소하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 1990년 12월 17일, 특허청은 두번째 분할출원서 및 세번째 분할출원서에 있는 모든 클레임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1991년 1월 4일, 특허권자는 두번째 분할출원과 세번째 분할출원서 모두에 포함되는 60~124번 클레임 복사본 1본을 특허청에 제출하여, 그후 각각의 분할출원건들은 “B”특허 “C”특허로써 등록되었다. C특허는 A특허와 마찬가지로 정맥을 통하여 액체를 유입하는 시스템과 관련된 것이었다. 반면에 B특허는 이러한 시스템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캐뉼라(cannular)와 관련된 것이었다.

특허권자는 미국특허청에 출원하는 것이외에도 1989년 1월 PCT출원하여 89년 7월 공개되었다.

### 3. 재판(the Trial)

등록받은 후, 특허권자는 A, B, C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특허 세건 모두 특허권자의 PCT 출원건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모출원이 분할출원이 이전에 포기되었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각각의 분할출원에 대해서 모출원일 우선권 주장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1심은 피고가 요청한 “PCT공개에 의한 무효” 법률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1심은 특허권자가 A특허와 C특허 출원시 특허청에 격막관련 선행기술을 게시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행위를

5) Baxter Int'l, Inc. v. McGaw, Inc., 958F. Supp. 1313(N.D.Ill.1997).

하였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B특허(캐뉼라특허) 역시 모출원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특허권자의 부당행위<sup>5)</sup>로 인해 실시불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특허권자는 항소하였다. 피고자 역시 법률 심·청원이 기각당한 것에 대해 항소하였다.

### III. 항소

#### 1. A특허와 C특허의 실시가능성 (Enforceability)

항소심에서 CAFC는 먼저 A특허와 C특허 출원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부터 살폈다. CAFC는 이런 부당행위를 밝히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단계의 분석 즉, 첫째, 게시 누락된 자료가 해당발명에 미치는 중대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둘째, 특허청을 기만하려한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만약 게시되지 않은 중요사항이 있다거나, 기만의사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1심은 각각의 정도를 반드시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명세서에 게시되지 않은 중요사항이 많다면 굳이 기만의사가 있었음을 밝힐 필요는 없으며, 출원자가 과실을 행했을 경우, 1심은 여러가지 정황에 비추어서 해당 특허 실시 가능성을 판단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항소심에서 첫번째 논점은 선행기술 격막이 본 발명에 중대성이 있는 자료라고 판단한 1심재판에서 오류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심사관

이 특허 등록여부를 결정<sup>6)</sup>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자료는 해당 발명에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해당 자료가 이미 심사관에게 제출한 다른자료들과 중복되거나, 또는 기준에 심사관에게 제출한 자료보다 중요하지 않을 경우, 출원인은 별도로 그 자료를 게시할 필요는 없다.

CAFC는 작은 구멍(slit)부분을 제외한 클레임된 투입부분(injection site)의 모든 특징이 이미 선행기술격막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CAFC는 비록 작은 구멍(slit)이 본 발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점은 인정하지만, 선행기술격막에 투입구가 없다는 사실이 다른 게시자료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단지 한가지 요소만이 차이가 난다고해서, 더욱기 그 차이점이 발명에 중요한 요소일 경우, 심사관이 특허 허여판단시 해당 자료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 해당 자료가 발명에 불필요한 자료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달리 말하면, 발명에 중대성이 있는 자료(materiality)인가는 별도로 분리하여 살피는 어느 한가지 요소에 의해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심사관에게 제출된 다른 종래 기술에 비추어 보아, 청구된 발명과 게시되지 않은 인용자료간 전체적인 유사성에 의거 판단되어져야 한다. CAFC는 선행기술격막이 본 발명에 있어 중대성이 있는 자료인가 판단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 발명의 클레임 내용에 의거 1심에서 적절히 판단되었다고 결론지었다.

CAFC에 따르면, 종래기술 격막이 본발명과 무

5) 본 기준은 A특허, B특허 및 C특허가 출원 당시에는 효력이 있었으나, 현재 미국 특허청은 중대성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

관하지 않다고 하였다. CAFC는 만약 종래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한 것이 출원자가 바라는 결과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발명은 그 해당 종래 기술과 무관하다고 하였다. 선행기술격막만 가지고는 통상의 기술을 가진자에게 작은 구멍(slit)를 장착한 종래기술과 유사한 격막이 달리 작동되지 않는다는 암시를 주지 않는다. 비록 종래기술이 작은 구멍(slit)을 장착한 격막이 선행기술의 문제점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작은구멍(slit)을 장착한 격막 사용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선행기술 격막자료가 다른 인용자료와 중복된 것도 아니다. 선행기술 격막은 A특허와 C특허에서 Slit부분과 캐뉼라(Cannular)를 제외하고 발명상 청구된 모든 요소를 조합한 유일한 것이다. 비록 다른 게시자료에서 독립적으로 slit이 장착된 격막과 캐뉼라에 대해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단하나의 장치에 모든 특징을 포함한 종래기술 격막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아마 심사관이 본 특허 허여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여겼을 것이다. 따라서, CAFC는 선행기술격막이 본발명에 있어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한 1심의 결정은 완벽하다고 하였다.

특허권자가 50여건이 넘는 인용자료를 게시하였다고 해서 출원자의 선의(good faith)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특허권자는 본 발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가장 관련이 깊은 선행기술 한건에 대한 게시의무를 행하지 않았다. 선행기술 격막은 명백히 본 발명과 관련이 있으며, 발명자는 본 선행기술격막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더군다나, 본 발명이 선행기술격막을 근거로 한 정도를 볼 때, 선행기술격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추론은 정당하다. CAFC는 특허권자의 행동 그 자체로 특허청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한 1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CAFC는 2심이 특허권자의 부당행위 판단시 재판재량권을 남용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A특허와 C특허는 그러한 부당행위로 인해 실시가능성을 상실했다는 1심의 결정을 재확인하였다.

## 2. B특허의 실시가능성 (The Enforceability of Patent B)

두번째로 CAFC는 A 및 C특허와 동일한 모출원으로부터 분할출원된 B특허의 실시가능성 여부를 다루었다. 1심은 특허권자가 모출원과정에서 행한 부당행위 및 게시의무(duty of candor) 위반 사항은 전 특허출원과정으로 확대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B특허 역시 실시가능성을 상실했다고 하였다. 1심은 모출원과정에서 선행기술 격막을 게시하지 않은 사실은 모출원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출원건까지 영향을 미치며, 해당 모출원으로부터 분할된 모든 분할출원건들은 그러한 부당행위로 인해 실시가능성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CAFC 역시 출원 초기에 발명자가 게시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출원당시의 발명과 동일하거나 또는 관련된 출원서에 포함된 모든 청구항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Baxter건

7) Fox Indus., Inc. v. Structural Preservation Sys., Inc., 922 F. 2d 801, 17 USPQ2d 1577(Fed. Cir. 1990); Driscoll v. Cebalo, 731 F.2d 878, 221 USPQ 745(Fed. Cir. 1984)

의 경우 특허청은 발명자에게 모출원이 별개의 다른 발명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었다. 특히 두번째 분할출원, 즉 B특허의 청구항은 ‘끝이 둥툭한 캐뉼라의 구조’에 관련된 것이다. 게시되지 않은 선행기술 격막은 B특허 클레임에 중대성이 있는 자료는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 CAFC는 B특허의 경우, 비게시된 선행자료가 등록과정에서 취소된 클레임에 중대성이 있는 것이라면 등록받은 나머지 클레임에 대해서도 역시 중대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선판례<sup>7)</sup>와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Baxter건에서 선행기술격막이 모출원 클레임에 중대성이 있는 자료라고 해서, B특허 청구항에도 그러한 것이 아니다. B특허 청구항들은 전혀 다른 발명이므로(출원을 한정하라는 통지서에서 언급되었듯이) 다른 발명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B특허의 클레임이 부당행위로 인해 실시가능성을 상실한 다른 클레임과 함께 하나로 출원되었던 것 이긴 하지만 부적절하게 모출원에 포함되었던 것 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B특허 클레임까지 실시가능성을 상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CAFC는 어떤 한 클레임과 관련된 부당한 행위가 전체특허 클레임 실시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인정했다. 즉 부당행위로 인해 실시가능성을 상실한 클레임을 보정하거나 취소한다고 해서 발명에 중대성이 있는 자료를 게시하지 않은 발명자의 나쁜 의도를 무마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어떤 특정 클레임에 중대성이 있는 선행자료를 누락한 행위는 특허출원과정에서 최초 출원시

와 다른 형식으로 등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단순히 관련 클레임을 보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으로 치유될 수 없다. 그러나 CAFC는 첫째, 클레임이 부당행위로 인하여 실시가능성을 상실한 발명으로부터 분할출원을 통하여 분리된 클레임, 둘째, 등록된 클레임이 비게시된 선행기술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 그 해당 클레임이 분할출원되어 등록된 특허는 모출원시 행한 부당행위로 인해 실시가능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CAFC는 B특허의 경우 1심 판결을 번복하여 특허권자가 모출원과정에서 게시의무를 위반했지만, 실시가능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 3. B특허의 유효성

#### (the Validity of Patent B)

다음으로 CAFC는 B특허의 유효성문제를 다루었다. B특허는 1988년 1월에 출원했던 모출원의 출원일을 우선권주장하여, 1990년 6월 특허청에 제출한 분할출원이다. 본 분할출원은 1~59번 클레임만을 포함하고 있었다. 분할출원과 동시에 특허권자는 1~59번 클레임취소요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였다. 그후 특허권자는 특허청에 60~124번 클레임을 1991년 1월에 제출하였다. 특허청은 본 분할출원건은 1990년 6월에 출원되었지만 실제적인 출원일은 1988년 1월로 취급하였다.

피고는 B특허의 유효출원일은 모출원이 출원된 1988년 1월이 아니고 60~124번 클레임을 추가 제출한 1991년 1월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피

8) 35U.S.C.\_112

고는 B특허는 B특허의 실제 유효출원일보다 1년 정도 앞서서 1989년 7월 공개된 특허권자의 PCT 출원건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CAFC는 “출원서에는 적어도 하나이상의 클레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특허법<sup>8)</sup>을 준용하였다. 클레임이 하나도 없는 출원이었다면 그 출원특허는 불완전한 것이며, 따라서 출원일을 획득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항소심의 논점은 특허권자가 특허청에 1~59번 클레임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1~59번 클레임을 취소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새로운 클레임은 추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특허법상 본 특허출원이 출원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CAFC는 실제적으로 특허권자가 1~59번 클레임이 본 분할출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으므로 특허청은 분할출원서가 제출되었을 때 1~59번 클레임은 없었던 것으로 하도록 판시하였다. 더군다나, 특허권자의 명백한 요청에 의거 특허청은 출원수수료를 계산하기 전에 1~59번 클레임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1~59번 클레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CAFC의 판단은 특허권자도 특허청도 모두 1~59번 클레임을 본 분할출원의 일부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CAFC는 출원자가 특허청에 일련의 클레임을 제출하면서 그 일련의 클레임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새로운 클레임을 대체하지 않았다면, 출원자는 특허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출원일을 부여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즉 클레임이 없는 분할출원을 하였기 때문에 특허법상 출원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출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CAFC는 출원은 반드시 하나의 클레임

이라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법률을 준용하였고, 분할출원은 모출원과 반드시 상호 출원계류중이어야 한다는 법률을 준용하였다. 또한 특허청은 이러한 법률요건 적용을 취소하여주거나, 일시 연장시켜 줄 권한이 없다. 따라서 두번째 분할출원의 출원일은 60~124번 클레임이 제출된 1991년 1월이다. 이 출원일은 모출원일이 포기된 1990년 6월보다 늦고 또한 B특허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한 PCT출원 공개일인 1989년 7월보다 1년이상 늦다. 따라서 CAFC는 B특허는 모출원에 근거한 우선권 주장이 불가능하며 특허법 102조(b)에 의거 특허권자의 PCT출원 즉 선행기술로 인해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 IV. 결 론

유효하면서 실시력이 있는 미국특허를 확보하고자 하는 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침해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은 본 Baxter사건을 보면서, 다음 몇가지 지침을 고려하기 바란다.

(1) 출원과정에서 게시의무(the duty of candor)를 위반할 경우, 모출원으로 등록된 모든 클레임뿐만 아니라, 연관된 다른 특허출원까지 실시가능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출원시 선행기술을 게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특허와 관련있는 모든 특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그러한 관련된 특허의 실시가능성을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출원자가 비게시된 선행기술과 관련없는 클레임을 모출원으로부터 분할출원한 경우는 모출원에서 있었던 부당행위로 인해 분할출원건까지 실시가능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즉, 비게시선행자료와 관련없는 클레임은

분할하여 별도의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자는 부당행위로 인해 전체클레임에 대한 실시가능성이 상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 특허청에 일련의 클레임을 제출하면서, 새로운 클레임을 추가하지 않은 채 클레임을 모두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특허법에 근거 해당

출원은 출원일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Baxter International, Inc. v. McGaw Inc 재판에서 CAFC가 제시한 가이드 라인과, 본고에서 제시한 몇가지 사항을 잘 고려하면 한국기업들은 향후 미국법 하에서 특허유효성 및 실시가능성 평가에 대한 약간의 통찰력을 갖게 될 것이다. 발특9811

### 화제의 발명가

## 칠순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발명품 쓴아내

목민산업사 최창수 사장

올해 7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한 발명가가 있어서 화제다. 목민산업사의 최창수 사장이 바로 그.

최사장은 젊었을때부터 발명계에 입문하여 수많은 발명품을 개발했고, 스스로 사업화하기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쉬라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열적으로 발명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그의 대표적인 발명품은 수신자 선택 전화기로, 이것은 전화를 건 사람이 자신이 누구라는 신호를 수신자에게 보내서 수신자가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전화기이다.

또한 요즘 개발한 발명품은 등허리받침

조끼로, 이 조끼는 등산이나, 낚시에 착용하는 조끼의 등판을 플라스틱과 같은 합성수지로 형성하여 구부러진 허리를 교정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성장기의 어린이도 곧은 허리로 만들어주는 발명품이라고 한다. 등산이나 낚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착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리나 등이 구부러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구부러진 허리도 바르게 교정된다.

최사장은 이 발명품을 사업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를 찾고 있다고 한다.

\* 연락처: 목민산업사(0341)982-3844